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141
----------	------

발의연월일 : 2020. 12. 4.

발의자 : 김예지 · 이명수 · 추경호

김희국 · 최승재 · 김선교

구자근 · 이종성 · 윤창현

홍석준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 및 교육기관은 수업 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보상금 제도(이하 “수업 목적의 보상금 제도”라 함)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고,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는 수업 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공표된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음.

그런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은 정규 학교의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교육활동을 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표된 저작물 이용에 제한이 있음.

특히, 정규대학과 비교할 경우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학습자도 사회적 ·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습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

임.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교육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과 동일하게 교육기관으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률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이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도 수업 목적의 보상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공표된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제4호 및 제101조의3 제1항제2호의2 신설).

## 저작권법 일부개정 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수업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과정으  
로 한정한다)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제101조의3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  
정(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수업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과정  
으로 한정한다)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  
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u>&lt;신설&gt;</u>	<u>2의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수업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과정으로 한정한다)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u>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